##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73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박수영・김기현・이헌승

곽규택 • 백종헌 • 김상훈

한정애 · 김소희 · 서지영

김도읍 • 박성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사용범위 역시 제한적임.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고시한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

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법률 제 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을 "회원 및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기업"을 "기업,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정보화"를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업무) ① ~ ⑦ (생 략)	제106조(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중앙회는 <u>회원</u> 의 공동사업을	® <u>회원 및 중소기업</u> -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			
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1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기업</u> 의 출연금	나. <u>기업, 법인, 그 밖의 기관</u>		
	<u>• 단체 및 개인</u>		
다. • 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	2		
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정보화</u> 사업	마. <u>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u>		
	지원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